

KLSI

ISSUE PAPER

제 94 호
2018-9호
(2018.06.19.)

www.klsi.org

최저임금 고용효과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목차]

1. 머리말
2. 이론
3. 실증분석
4. 2018년 실증분석 결과
5. 맺는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50(충정로3가, 골든브릿지빌딩) 3층

전화 02) 393-1457

팩스 02) 393-4449

WWW.facebook.com/ksiedit

<요 약>

- 영미권을 중심으로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율)이 1,060원(16.4%)으로 예년에 비해 높게 인상되자,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증분석 결과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는다.
- 2018년 최저임금 수혜자는 552만 명(27.7%)이고, 수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인상액(율)은 10만 8천원(10.6%)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연간 임금인상액 합계는 최대 7조 2천억 원(월 6천억 원)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1%가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불가능하며, 재정지출 확대와 소득재분배, 초기업 수준 단체교섭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 2017년 자영업자 568만 명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7만 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1만 명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부담이 늘지 않는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61만 명)의 부담이 늘 뿐이다. 하지만 이는 골목상권 보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카드 수수료 인하, 건물 임대료 규제 등 경제민주화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용효과¹⁾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1. 머리말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제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임금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국내 중고교 교과서는 여전히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가르치고 있고, 일부 언론은 기회 있을 때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담론을 퍼뜨리고 있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율)이 1,060원(16.4%)으로 예년에 비해 높게 인상되자,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론과 실증분석 두 측면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둘러싼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본 뒤, 지금까지 제시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실증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2. 이론²⁾

가. 신고전파의 완전경쟁시장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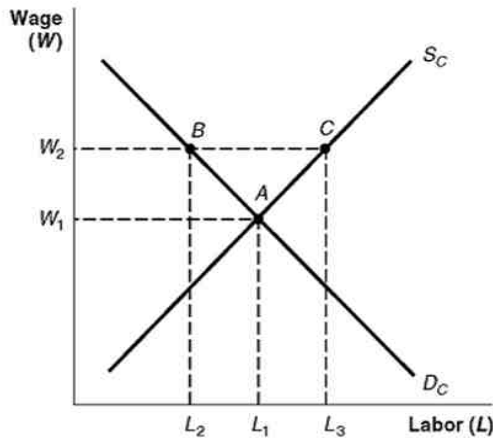
먼저 최저임금이 고용을 축소시킨다는 신고전파 모델부터 살펴보자.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노동공급곡선(S1)과 노동수요곡선(D1)이 만나는 점(E)에서 임금(WE)과 고용(LE)이 결정된다.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어 WE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W2)이 정해지면, 임금은

1) 이 글은 민주노총의 연구용역 의뢰로 작성한 글로, 김유선(2014)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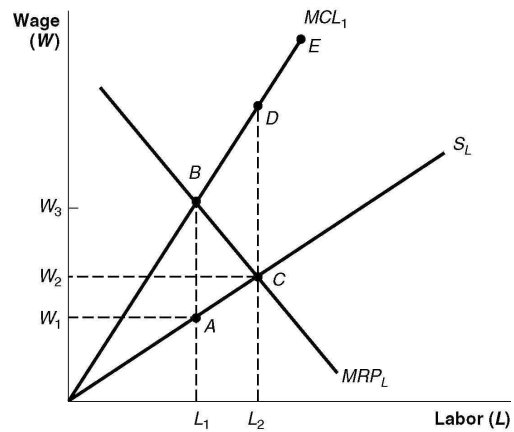
2) 주로 Kaufman & Hotchkiss(2006), Ch.6과 Hyclak, Johnes and Thorton(2005), Ch.5를 참조했음.

($W_2 - W_1$) 만큼 증가하지만 고용은 ($L_3 - L_2$) 만큼 감소한다. 최저임금은 취업중인 노동자에게는 임금인상을 가져다주지만, 다른 노동자에게는 일자리 상실을 가져다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완전경쟁시장



<그림 2> 수요독점 모델



나. 수요독점모델과 효율임금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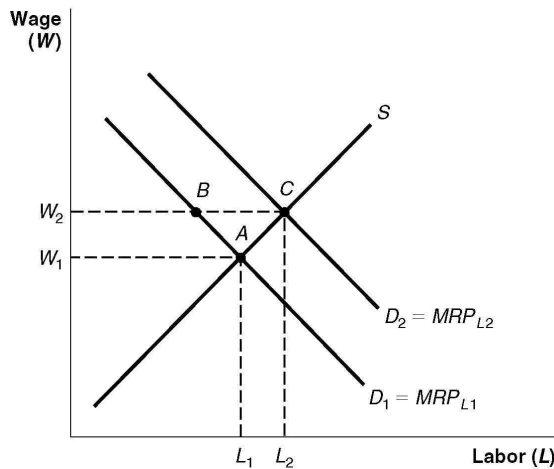
수요독점모델과 효율임금가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명제를 제시한다. 먼저 수요독점 모델에서 최저임금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그림 2>가 수요독점 노동시장이 아닌 경쟁적 노동시장이라면, 노동의 한계수입생산 곡선(MRPL)은 노동수요 곡선이 되어, 노동공급 곡선(SL)과 만나는 C점에서 임금(W_2)과 고용(L_2)이 결정된다. 그러나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한계수입생산 곡선과 한계비용 곡선(MCL1)이 만나는 점에서 고용이 결정되고(L_1), 임금은 노동의 한계수입생산과 일치하는 W_3 이 아닌, 이보다 낮은 W_1 에서 결정된다. 즉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고용은 경쟁적 노동시장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W_1 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W_2)이 결정되면, 노동자들 임금은 W_2 로 증가하고 고용은 ($L_2 - L_1$)만큼 증가한다. 물론 고용이 무한정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W_2 \sim W_3$ 사이에서 결정된다면 고용은 원래 고용수준인 L_1 보다 증가하지만, 최저임금이 W_3 을 상회하면 고용은 L_1 보다 감소하게 된다.

수요독점 모델에 대해서는 ‘수요독점이란 원래 특정 노동시장에서 오직 하나의 기업이 노동의 구매자인 경우를 말한다. 독과점기업들이 담합해서 유일한 구매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던가, 탄광촌에 광산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저임금 노동시장은 일반적으로 생산제품의 대체 가능성이 높고, 유사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며, 특히 소매상인 경우 지리적으로 밀집해 있어 매우 경쟁적인 노동시장이다. 따라서 저임금 노동시장에 수요독점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수요독점 모델 쪽에서는 ‘만약 기업에 대한 노동공급곡선이 어떤

이유에서든 우상향(右上向)한다면, 그리고 기업이 그들이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얼마간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이들 기업은 모두 수요독점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효율임금 가설은 임금이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완전경쟁시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그림 3>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높아지면($W_1 \rightarrow W_2$), 노동자들의 육체적 건강이 개선되거나 사기가 높아지고 노력(effort)이 증진되어 노동의 한계수입생산(MRPL)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노동수요 곡선은 우상방으로 이동하고 고용이 증가한다($L_1 \rightarrow L_2$). 물론 효율임금 가설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증가는 육체적 건강이 개선될 정도로 저임금이거나, 노동자들의 사기와 노력이 증가할 정도의 소폭 인상인 경우로 제한된다. 그러나 임금인상 폭 만큼 노동자들 노력이 증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질의 노동력 유입으로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림 3> 효율임금 가설



3. 실증분석

가. 영미권

1980년대 영미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10대 청소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초기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한 Brown et al.(1982)은 ‘시계열 분석결과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10대는 1~3%, 20대 초반은 1% 미만 고용이 감소한다’라 하고, Reynolds et al.(1991)은 ‘실증분석 결과 10대를 제외한 다른 집단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라 하고 있다.³⁾

3) Ressler et al.(1996)은 “미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파트타임 고용증가를 초래했다”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인상은 10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명제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이러한 명제가 도전 받게 된다. Card and Krueger(1995)는 최저임금을 인상한 주(州)와 인상하지 않은 주를 비교하는 일종의 자연실험 방법을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10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고용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Machin and Manning(1994)은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며, 1980년대 최저임금 비율 하락은 임금분산을 확대시켰을 뿐 고용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라 하고 있다.

2000년대에는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는 메타분석이 이루어졌다. Doucouliagos and Stanley(2009)는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10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측정한 64개 연구(1972~2007년 출간)에서 최저임금 탄력성 추정치 1,474개를 메타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는 출판 선택편의(Publication Selection Bias)에 오염되어 실제보다 크게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선택편의를 수정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있더라도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작다’고 밝히고 있다.

Leonard, Stanley and Doucouliagos(2014)도 ‘영국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측정한 16개 연구에서 236개 최저임금 탄력성 추정치와 710개 부분 상관계수를 메타 분석한 결과, 재가 돌봄 산업과 소매음식점 이외에는 유의미한 (-)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①정책담당자들이 고용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하거나, ②기업이 생산성, 가격, 이윤, 노동시간 조정 등을 통해 부정적 고용효과를 상쇄하거나, ③경쟁노동시장 모델보다 수요독점 모델이나 효율임금가설이 영국 노동시장을 더 잘 설명하기 때문’이라 하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메타분석 결과가 잇따르면서, 논의는 점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을 기업이 어떻게 흡수하는가에 모아지고 있다. Hirsch, Kaufman, and Zelenska(2011)는 ‘미국 조지아와 앨라배마 주 81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7~09년 연방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노동시간에 미친 유의미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은 가격인상, 이윤율인하, 임금격차 축소, 노동이동 감소, 높은 성과 기준 등 다른 조정채널을 통해 흡수된다’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①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조차 기업주들이 상쇄하거나 흡수해야 할 다른 비용인상과 비교하면 미미하며, ②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양한 조정 채널을 통해 해결되며, ③경영진은 고용감축이나 노동시간단축을 상대적으로 값비싼 반생산적 옵션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 하고 있다.

Schmitt(2013)도 ‘2000년 이후 이루어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를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다는 게 대세다. 가능한 조정 채널 11가지를 검토한 결과, 가장 중요한 조정채널은 노동이동 감소, 조직 효율성 개선, 고소득자 임금 덜 인상, 소폭의 가격 인상이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은 사용자들도 이러한 조정수단만으로 고용감소를 회피하기에 충분하다’라 하고 있다.

이밖에 1999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한 영국의 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최저임금은 기업 또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1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여성, 파트타임, 연소자, 소수민족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둘째,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수혜자 집단에서 고용 증가율은 평균치를 상회한다. 연소자들은 예외적으로 미세한 (-) 고용효과가 발견되지만, 청소년 노동시장은 주로 경기 사이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셋째, 최저임금 도입은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지도 않았고, 단위노동비용 증가를 가져오지도 않았다(Low Pay Commission, 2003).

나. OECD·ILO

OECD(1998)는 최저임금의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첫째,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 최저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고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부분적으로 이견은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연소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여성이나 파트타임 등 다른 집단에서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발견할 수 없다.

둘째, 최저임금은 임금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새로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던 사람들은 임금이 인상되고, 이보다 얼마간 높은 임금을 받던 사람들은 간접효과 때문에 임금이 인상된다. 이는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에게 공정임금을 보장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이밖에 최저임금은 연령 간, 남녀 간 임금격차를 축소한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불평등이 낮고 저임금계층 비율도 낮다.

셋째, 최저임금은 노동자 가구에서 빈곤을 축소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한다. 그러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그 효과가 줄어든다. 빈곤가구 가운데 취업자가 한 사람도 없는 가구가 있고, 최저임금 수혜자의 부모가 중산층 이상인 가구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을 해소하는 데는 근로소득보조제가 좀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보조제는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저임금 노동자들을 '빈곤의 덫'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와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LO의 Saget(2001)는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20개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횡단면-시계열 분석을 한 뒤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첫째,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다고 해서 비공식 부문이 증가하거나 고용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 노동시장 경직성 특히 임금 경직성은 남미 국가에서 비공식 부문이 증가한 주된 요인이 아니다.

둘째, 1인당 국민소득, 제조업 평균임금 등을 통제하더라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빈곤률이 유의미하게 낮다. 최저임금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 한국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추정한 연구는 김유선(2004, 2011, 2014), 이시균(2007), 정진호(2008), 이병희(2008), 남성일(2008), 김우영(2010), 김주영(2011), 김대일(2012)을 꼽을 수 있다.

김유선(2004)은 1988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통계청의 월별 자료를 사용해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변화가 고용률 변화에 미친 영향을 시계열 분석했다. 분석결과 ‘전체, 남성, 여성, 청년층, 고령층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25~54세 중장년층에는 유의미한 (+) 영향을 미쳤다. 설명변수가 최저임금 인상률일 때는 남성과 청년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여성과 중장년층, 고령층에 유의미한 (+)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유선(2011)은 1990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월별 자료를 사용해서 시계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지난 20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으며, 2000년 이후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유선(2014)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6개 광역시도의 시계열-횡단면 자료를 사용해서 패널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을 전체 고용으로 하던 청년, 고령자, 여성으로 하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시균(2007)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사업체패널자료를 사용해서 전체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패널분석 했다. 분석결과 ‘최저임금 지수는 고용률과 고용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은 유의미한 (+)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진호(2008)는 시계열 횡단면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비율과 최저임금 수준이 고용률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15~24세 청년층은 유의미하지 않은 (-), 25~54세 중장년층은 유의미한 (+), 55세 이상 고령층은 유의미한 (-)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병희(2008)는 이중차이법을 사용해서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직장유지율과 취업유입률에 미친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김주영(2011)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의 고용효과가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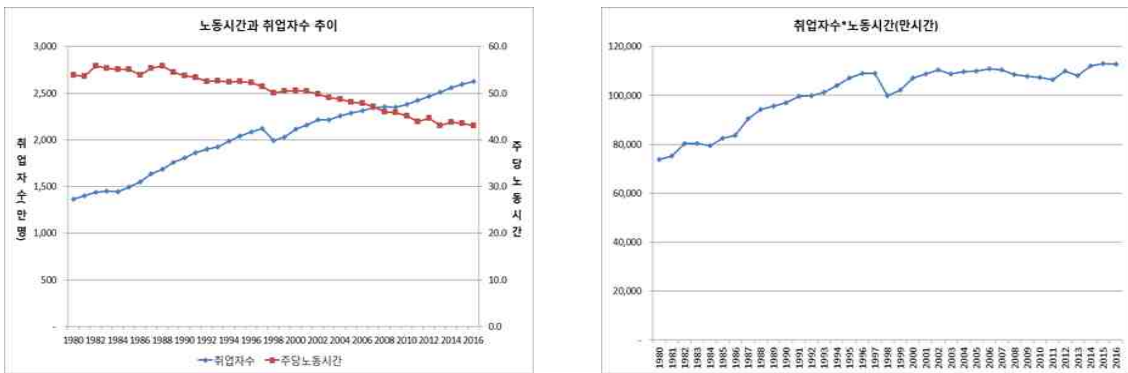
남성일(2008)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2007년의 제도 변화가 수도권 지역 아파트 경비근로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의 적용 확대는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 효과를 가져다준 반면, 노동수요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우영(2010)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자료를 이용해서 15개 시도의 시계열 횡단면 자료를 구축했다. 기업에는 채용비용, 훈련비용, 해고비용 등 준고정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조정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함을 고려하여, 동태적 패널 모형을 사용해서 최저임금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남녀 청년을 분석대상으로 할 때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가 없지만, 남녀를 구분하면 최저임금이 10% 증가할 때 청년여성(15~24세)은 1.6%, 청년남성(15~29세)은 1.1% 고용이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대일(2012)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08~10년)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모형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시간당 임금이 하위 5% 이하인 근로자)의 신규채용을 감소시키는지 분석했다. 분석결과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에서만 신규채용 감소효과가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유경준(2013)은 외국인 근로자를 통제하지 못 했기 때문에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의 신규채용 감소효과도 과대 추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정민·황승진(2016)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06~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분석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수 기준으로 약 0.14% 감소한다’고 보고했다. 한데 이들이 사용한 종속변수는 고용(근로자수)이 아닌 총노동량(근로자수×노동시간)이다. 2000년대는 주40시간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노동시간이 계속 감소한 시기다. 취업자(또는 근로자)는 계속 증가하고, 총노동량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그림 4> 참조). 따라서 이정민·황승진(2016)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과대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연도별 노동시간과 취업자수, 노동공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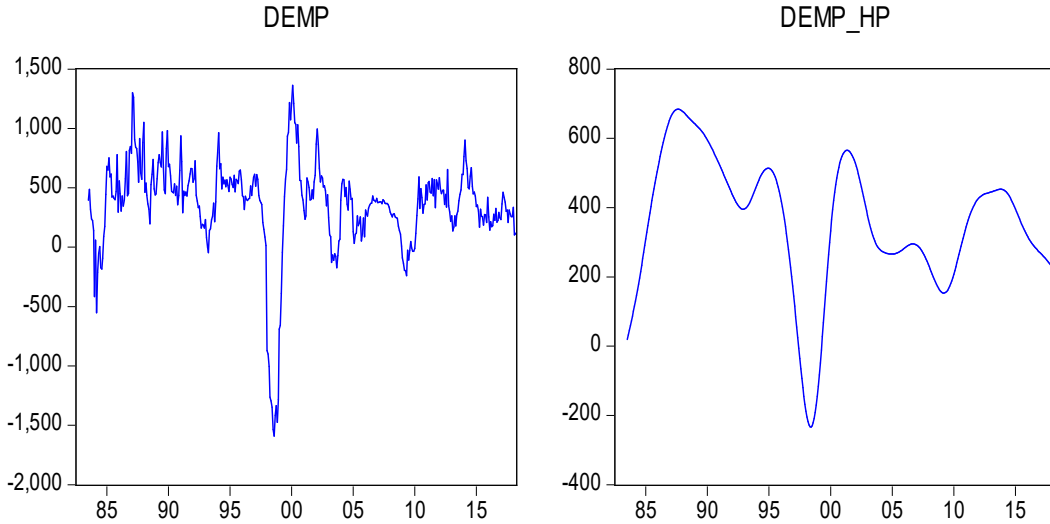


4. 2018년 실증분석 결과

가. 고용통계

2018년 2~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10~12만 명 증가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취업자 증가세 둔화가 마치 최저임금 때문인 양 보도했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장기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최저임금과는 무관하다. <그림 5>에서 왼쪽 그래프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를 그린 것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HP(Hodrik-Prescott) 필터링을 통해 장기 추세를 그린 것이다. 2013년 11월(45만 3천명)을 정점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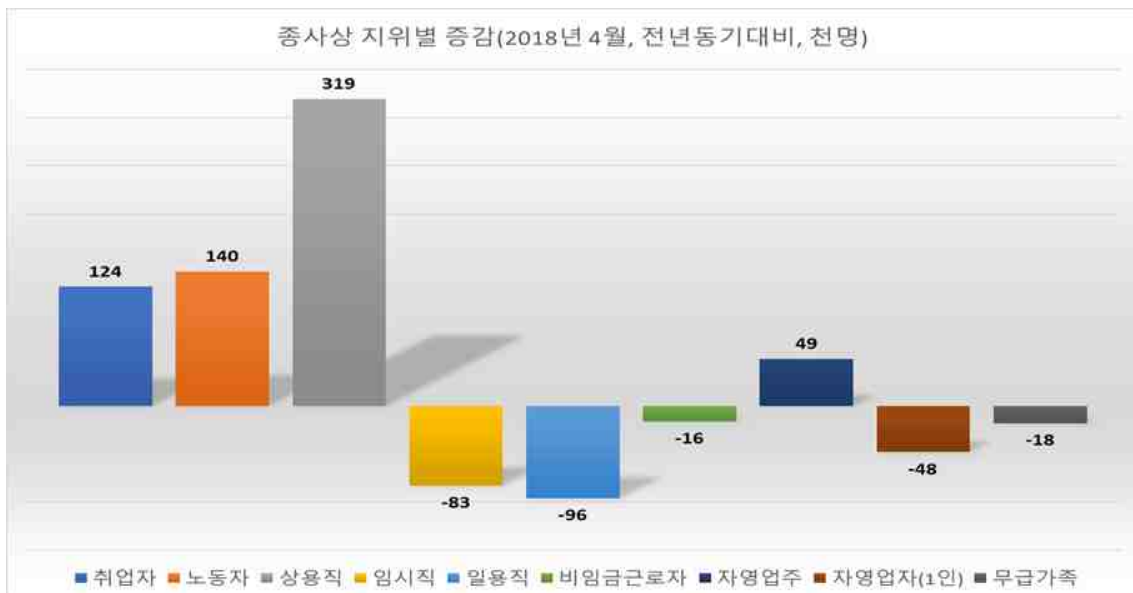
〈그림 5〉 월별 취업자 증감과 장기추세선(1983.7~2018.4, 전년동월 대비, 단위:천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년 4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 4천명 증가했다. 임금노동자는 14만명 증가하고, 비임금 근로자는 1만 6천명 감소했다. 임금노동자 가운데 상용직은 31만 9천명 증가했고, 임시직은 8만 3천명, 일용직은 9만 6천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주(고용주)는 4만 9천명 증가했고, 본인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는 4만 8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8천명 감소했다. 이상은 최근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내수부진 또는 경기침체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해준다(<그림 6> 참조).

〈그림 6〉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2018년 4월, 전년 동기 대비, 단위: 천명)



나. 고용효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실증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홍민기(2018)가 유일하다. <표 1>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1월 0.020, 2월 0.007, 3월 0.05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노동시간에 미친 영향은 1월 -0.168*, 2월 -0.087*, 3월 -0.054로, 1~2월에는 유의미한 (-) 영향을 미쳤지만 3월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고, 시간이 갈수록 계수 값이 작아지고 있다. 이상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는다. 기업은 초기에 노동시간 단축으로 대처했지만, 점차 종전의 노동시간 관행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표 1>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 (고정효과 상호작용 모형)

	고용량				근로시간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1월	0.020 (0.35)	0.106 (1.48)	-0.027 (-0.16)	-0.270 (-0.63)	-0.168* (-4.43)	-0.083* (-2.69)	0.154 (1.97)	-0.206 (-0.89)
2월	0.007 (0.13)	0.120 (1.69)	-0.057 (-0.33)	-0.259 (-0.63)	-0.087* (-2.42)	-0.045 (-1.50)	0.181* (2.34)	-0.259 (-1.09)
3월	0.051 (0.93)	0.080 (1.13)	-0.009 (-0.05)	-0.029 (-0.07)	-0.054 (-1.50)	-0.030 (-1.01)	0.124 (1.62)	-0.250 (-1.05)
표본수	2,184	2,184	2,184	1,819	2,184	2,184	2,184	1,81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홍민기(2018)에서 재인용.

주: 괄호안은 t값임.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산업효과 포함.

다. 임금효과

김유선(2018)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7년 8월) 자료와,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방법론을 사용해서, 2018년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와 임금인상액을 추정했다(<표 2> 참조). 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영향은 316만 명(15.9%), 간접영향은 236만 명(11.9%)이다.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을 합친 전체 수혜자는 552만 명(27.7%)으로, 노동자 4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둘째,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월평균 임금인상액(인상률)은 직접영향이 17만 4천원(17.6%), 간접영향이 2만 1천원(1.4%)이다. 전체 수혜자 552만 명에게 1인당 월평균 10만 8천원(10.6%)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셋째,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연간 임금인상액을 합하면 직접영향이 6조 6천억 원, 간접영향이 6천억 원이다. 전체 수혜자 552만 명이 받는 연간 임금인상액을 합하면 7조 2천억 원(월 6천억

원)이다.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서 피용자 보수총액은 2016년 736조 1천억 원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액은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1%에 못 미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불가능하며, 재정지출 확대와 소득재분배, 중소기업 수준 단체교섭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표 2〉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와 임금인상액

구 분	사각지대(1)	직접영향(2)	간접영향(3)	전체(4=2+3)
수(천명)	1,075	3,155	2,360	5,515
비율(%)	5.4	15.9	11.9	27.7
1인당 월평균 임금인상액(만원)		17.4	2.1	10.8
1인당 월평균 임금인상률(%)		17.6	1.4	10.6
월 임금인상액 합계(억원)		5,485	484	5,969
연 임금인상액 합계(억원)		65,821	5,806	71,62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7년 8월), 김유선(2018),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 임금은 얼마나 오를까”(KLSI 이슈페이퍼 87호)에서 재인용.

- 주: (1) 최저임금 사각지대 = 2017년 최저임금(6,470원)의 80% 미만
 (2) 직접영향 = 2017년 최저임금(6,470원)의 80% ~ 2018년 최저임금(7,530원)
 (3) 간접영향 = 2018년 최저임금(7,530원) ~ 2018년 최저임금의 115%(8,659.5원)
 (4) 전체 = 직접영향+간접영향

5. 맺는말

영미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최저임금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었지만, 1990년대 이후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연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Neumark, Salas and Wascher(2013) 등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계속 보고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Chapman(2004)의 “최저임금은 고용증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조건 개선에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 결과의 차이는 노동경제학자들에게 흥미로울지 몰라도 정책입안자나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흥미로울 게 없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저임금 산업에 부정적인 고용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는 정책적 함의는 동일하기 때문이다”는 지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자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017년 현재 자영업자는 568만 명인데, 이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7만 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주는 161만 명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주 161만 명의 부담이 느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골목상권 보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카드 수수료 인하, 건물 임대료 규제 등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며,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생활하는데 필요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훼손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자영업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구성원이 저임금 노동자인 경우도 무수히 많다.

참고문헌

- 김대일(2012), “최저임금의 저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 억제효과”, 『노동경제논집』 35:3.
- 김우영(2010), “최저임금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 지역-시계열 분석”, 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발표문.
- 김유선(2004),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근로자 고용 및 임금에 미친 영향 평가』.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유선(2011), 『최저임금 수준평가와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김유선(2014),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4-20.
- 김유선(2018),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 임금은 얼마나 오를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8-2(통권 제87호).
- 김주영(2011),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최저임금 효과분석』 제3장, 한국노동연구원.
- 남성일(2008),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31:3.
- 유경준(2013), “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 『KDI Focus』 제32호.
- 이병희(2008), “최저임금의 고용유지 및 취업유입 효과”, 『산업노동연구』 14(1).
- 이시균(2007),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노동리뷰』 6월호, pp.43-51.
- 이정민·황승진(2016),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39:2.
- 정진호(2008),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제6장, 한국노동연구원.
- 홍민기(2018), “2018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 한국노동연구원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 자료집.
- Brown, Charles, Curtis Gilroy, and Andrew Kohen. 1982.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0(2):487-528.
- Card, David and Alan B. Krueger. 1995. *Myth and Measurement : The New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
- Chapman, Jeff. 2004. "Employment and the Minimum Wage : Evidence From Recent State Labor Market Trends." *EPI Briefing Paper* .
- Doucouliagos and Stanley(2009), “Publication Selection Bias in Minimum-Wage Research? A Meta-Regression Analysi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7:2, pp.406-428.

- Hirsch, Kaufman, and Zelenska(2011), "Minimum wage channels of adjustment", IZA Discussion Paper No.6132.
- Hyclak, Johnes and Thorton(2005), *Fundamentals of Labor Economics*.
- Kaufman & Hotchkiss(2006), *The Economics of Labor Market*, 7th ed.
- Leonard, Stanley and Doucouliagos(2014), "Does the UK Minimum Wage Reduce Employment? A Meta-Regression Analysi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52(3):499-520.
- Low Pay Commission. 2003. *The National Minimum Wage: Fourth Report of the Low Pay Commission*.
- Machin, Stephen and Alan Manning. 1994. "The Effects of Minimum Wages on Wage Dispersion and Employment: Evidence From the U.K. Wages Council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7(2):319-29.
- Neumark, Salas and Wascher(2013), "Revisiting the Minimum Wage-Employment Debate: Throwing Out the Baby with the Bathwater?", IZA Discussion Paper No.7166.
- OECD. 1998. "Making the Most of the Minimum : Statutory Minimum Wages, Employment and Poverty." Pp. 31-79 in *Employment Outlook*, OECD.
- Ressler, Watson, Mixon. 1996. "Full Wages, Part-Time Employment and the Minimum Wage", *Applied Economics*, November, pp.1415-1419.
- Reynolds, Lloyd G., Stanley H. Masters and Colletta H. Moser. 1991. *Labor Economics and Labor Relations*, 10th ed., Prentice Hall
- Saget, Catherine. 2001. "Is the Minimum Wage an Effective Tool to Promote Decent Work and Reduce Poverty? The Experience of Selected Developing Countries." *ILO Employment Paper* 13.
- Schmitt(2013), "Why Does the Minimum Wage Have No Discernible Effect on Employment?",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